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1.0버전

2010년 9월

기후변화 관련공개를 장려하고 진전시키기





서문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에 대하여

CDSB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기업 주류 보고에 통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조직입니다. CDSB는 재무보고와 기후변화 관련 보고를 통합하고 규제방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존의 기준과 관행을 지원하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협력을 강구하는 포럼으로 역할을 하면서 그 임무를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CDSB는 자료조사, 분석, 좋은 관행에 입각한 지침과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CDSB 위원

Pankaj Bhatia
Director, GHG Protocol Initiative
World Resources Institute

Henry Derwent
President & CEO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

Nigel Topping
Chief Innovation Officer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Mark Kenber
CEO
The Climate Group

Mindy Lubber
President
CERES

Richard Samans (CDSB Chair)
Managing Director
World Economic Forum

Denise Sheehan
Executive Director
The Climate Registry

Matthew Bateson
Managing Director, Energy & Climate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DSB 사무국

Lois Guthrie, CDSB Executive Director,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Mardi McBrien, CDSB Secretariat Manager,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 기술 워킹그룹

Becky Fell
Deloitte

Jee In Jang
Chung-Ang University, South Korea

Alice Douglas
Dep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avid Rich
World Resources Institute

Julie Desjardins
Canadian Inst. of Chartered Accts.

Matthew Haigh
Aarhus University

Yoichi Mori
Japanese Inst. of Certified Public Accts

Stathis Gould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ts.

Alan McGill
PricewaterhouseCoopers

Steve Priddy
London School of Business and Finance

Heather Lovell
Edinburgh University

Amy Pawlicki
American Inst. of Cert. Public Accts

Will Webster
Grant Thornton UK LLP

Michael Nugen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ts.

Richard Spencer
Inst. of Cht. Accts. England & Wales

Kenneth Witt
American Inst. of Cert. Public Accts

Alan Willis
Canadian Inst. of Chartered Accts.

Gordon Wilson (TWG Chair)
KPMG

Jason Thistlewaite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Sarah Woodthorpe
Ernst & Young

Jackie Zorovich
The Climate Registry

Pedro Faria
Technical Director CDP

CDSB 자문위원

Marlys Appleton

Vice President
AIG

Nathan Fabian

CEO
Investor Grp. Climate Change

Tom Baumann

Co-founder & Director
GHG Management Institute

Tobias Puhlmann

Principal Advisor, Energy & Climate Change
Rio Tinto

Riva Krut

Director of Sustainability
Praxair Inc

Rhian Kelly

Head of Climate Change
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Stephanie Pfeifer

Project Director
Inst. Investor Grp. Climate Change

Eric Lounsbury

Strategy Associate
Carbon Trust

Jeffery Smith

Lead Partner -Environmental Practice
Cravath, Swaine & Moore LLP

Yoshiharu Tachibana

Sustainability Advisory to the Board
TEPCO

Jim Rogers

Chairman, President & CEO
Duke Energy

Ian Wood

Performance & Reporting Manager
BT

Remco Fischer

Program Officer
UNEPFI

Bill Thomas

Counsel - Environmental & Climate Change Practice
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LLP

Lee Barken

IT Practice Leader
Haskell & White LLP

Wood Turner

Executive Director Investor Grp. Climate Change
Climate Counts

CCRF의 배경

CCRF는 원래 2009년 5월에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세계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결론 문서를 위한 근거와 함께, 공개초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대한 반응과 보고는 www.cdsb.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RF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한 CDSB의 대응과, CDSB가 수행하고 위탁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CCRF의 1.0버전은 최종 프레임워크를 의미하기보다는 발간일 즈음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정보에 기반한 최신판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CDSB는 CCRF를 실행한 경험의 관점에서, 그리고 기후변화정보 공개 관행의 발전에 대응해 나가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CCRF를 구축하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CCRF는 본 문서의 뒤에 있는 결론에 대한 근거와 함께 읽혀지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CDSB 실행계획에는 CCRF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CDSB가 어떻게 작업을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정보제공 규정을 위한 규제 요건이 도입됨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조직이 생겨나고, 특정한 유형의 정보, 특히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기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의무적이고 자발적인, 전세계의 다양한 시책들은 비록 서로 상이한 정책 배경 속에서 개발되었지만, 이들은 몇 가지 근본적인 지표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CCRF를 개발하기 위한 CDSB의 접근방법은 주류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 공통된 지표들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CRF는 국제적인 규제 개발과 지지를 확대시키고, CDSB 위원회와 공인된 표준제정자들의 성과를 높입니다.

CDSB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CDSB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info@cdsb.net으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CDSB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cdsb.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널리 확산하는 것을 권장하며, 다른 출판물을 발췌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완전히 밝히기 바랍니다.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나 탄소정보공개 위원회는 개인이 이 문서의 내용에 따라 특정 행동을 지향하거나 지양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CDSB의 실행계획은 www.cdsb.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장 소개

목표	1.1 - 1.2
정의 및 표기	1.3 - 1.4
중점 이용자	1.5
기대 성과	1.6
지위	1.7 - 1.8
영향	1.9
주류 재무보고서	1.10 - 1.12
검증	1.13 - 1.14

2장 필수요구사항

소개	2.1 - 2.2
의사결정시 필수요구사항	2.3 - 2.4
내용	2.5
투자자 관점	2.6 - 2.7
경영진 관점	2.8 - 2.10
규제 관점	2.11
준비 시 필수요구사항	2.12 - 2.15
미래 전망 및 과거 실적	2.16 - 2.17
보고 기간	2.18 - 2.19
조직의 경계	2.20 - 2.21
준수 확인서	2.22 - 2.23
정보 준비관련 기준, 정책 및 조직의 경계	2.24 - 2.25
발표 시 필수요구사항	2.26 - 2.29
발표 형식	2.30 - 2.31
정보의 위치	2.32 - 2.35
성과측정 및 지표	2.36 - 2.38
비교 분석	2.39 - 2.40
세분화	2.41 - 2.42
필수요구사항 요약	

3장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성

소개	3.1 - 3.3
특징을 제공하는 출처	3.4 - 3.5

기본적인 특징

관련성	3.6
충실한 소개	3.7 - 3.12
특징 제고	3.13 - 3.19
제한 요소	3.20
중대성	3.21
비용	3.22 - 3.30
	3.31 - 3.35

4장 공개 내용 필수요구사항

소개	4.1
영향	4.2
공개 내용 필수요구사항 - 요약	4.3
전략 분석, 위험 및 지배구조	4.4 - 4.5
1. 전략 분석	4.6 - 4.8
2. 위험	4.9
3. 기회	4.10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4.11
4. 경영진의 행동	4.12 - 4.13
5. 미래 전망	4.14 - 4.15
6. 지배구조	4.16 - 4.17
온실가스 배출	
소개	4.18
온실가스배출 내용 필수요구사항 - 요약	4.19
공인 온실가스 보고방침	4.20
온실가스 배출 분류	4.21 - 4.22
조직의 경계 설정	4.23 - 4.26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4.27
온실가스 배출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필수요구사항	4.28 - 4.33

부록 1- 결론을 위한 근거

1장 소개

목표

1.1 기후변화가 조직의 전략, 실적과 전망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대한 정보는 주류 재무보고 이용자에게 해당 조직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위험, 기회와 재무적인 영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CDSB의 CCRF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가 조직의 전략, 실적과 전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도출해 내는 데 있습니다.

1.2 위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CCRF는 주류 재무보고서 내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 또는 주류 재무보고서 내 재무실적과 연결된 기후변화 정보의 공개에 대한 필수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CCRF를 따른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은 기후변화 관련 공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발표할 때 가이드선과 설명자료의 도움을 받아 CCRF의 필수요구사항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정의 및 표기

1.3 다음의 용어는 CCRF에서 특수화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 투자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를 대표하는 정보로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의해 설정된 주제나 정보의 종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CCRF의 4장에 기술되어 있듯이 일반적으로 전략 분석, 위험과 거버넌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보고로 나뉩다.

주류 재무보고서 : 이 용어는 아래의 항목 1.10-1.12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CCRF의 필수요구사항은 주류 재무보고서 내 기후변화 관련 공개나 재무보고서 내 재무실적에 대한 정보와 연결된 관련 공개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연결됨”이라 함은 다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공개는 주류 재무보고서나 회사 웹사이트 내 관련 부분과 상호 참조됩니다. (항목 2.33 확인)

* 몇몇 사법권 안에 있는 조직에서는 투자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연간보고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포함해 규제적인 필요조건을 넘어 재무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래 주류 재무보고서 안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지만 조직들은 자발적인 연간보고서 준비에 CCRF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공개가 자발적인 연간보고서에 담기거나 주류 재무보고서에 결부된 경우, 또는 자발적인 연간 보고서가 CCRF에 부합함을 주장할 경우에는 CCRF의 필수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조직 : 따로 정의되어있지 않는 한², 조직은 집단, 회사, 복수의 회사 또는 자회사나 주식계좌가 마련된 공동지배기업을 포함하여 통합 재무제표가 마련된 독립체를 뜻합니다.

성과 : 조직의 성과는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을 움직이는 경제적 자원, 재무구조, 유동성, 지불능력, 운영 환경 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재무성과는 조직이 투자해 온 자원에서부터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무성과는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이나/또는 체계적인 위험으로 인한 성과, 생존능력, 수입/성과에 대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합니다.³

규제 요건 : CCRF의 목적을 위한 규제요건에는 지방, 마을, 주, 국가 및 지역 법률과, CCRF 4장에 열거된 정보의 모든 범주를 망라하는 정부 지원 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다음의 규제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규칙과/또는 참조기준과/또는 방법론을 규정합니다.

*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관리와 관련한 위험과 전략에 대해 연간 기업 기록 또는 증권 기록 안에 공개를 할 것을 분명하게 또는 은연 중에 요구합니다.

2 4장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위해 조직의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3 성과(performance)의 정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제표 준비 및 발표 프레임워크 (2001년 4월 채택)의 항목 15-20에 기반합니다.

1.4 CCRF에 부합하기 위한 필수요구 사항들은 “해야 합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굵은 기울임 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다른 부분들은 지침과 설명자료에 해당됩니다. CCRF의 필수요구사항들은 2장 끝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중점 이용자

1.5 CCRF의 목적은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현재 혹은 잠재적인 주식투자자, 대출기관과 그 밖의 채권자들에게 보고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자본 제공자⁴로서 그들의 역량 안에서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마찬가지로, CCRF는 주류 재무보고서의 주요한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다른 재무보고 이용자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혹은 잠재적 투자자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⁵

기대 성과

1.6 필수요구사항은 기후변화 관련 공개 준비에 조화로운 접근법을 장려함으로써 CCRF의 목적을 지지하는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재무정보를 맥락 속에서 배치시키고 투자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무제표를 보완하고 보충합니다.

* 가장 중요한 기후변화 관련 이슈-조직의

전략, 경제적인 성과와 전망에 영향을 주는 것을 포함-로서 경영 전망을 투자자에게 알려줍니다.

*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직이 채택한 기후변화 관련 전략, 그 전략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거버넌스 절차 그리고 그 전략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조직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지속적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검증 활동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킵니다.

위치

1.7 CCRF는 주류 재무보고서나 이와 연관된 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발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발간자료에 명시된 재무보고의 중요한 원칙과 목표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RF의 입장에 대해 IASB나 그 회원단체에게 자문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1.8 CCRF는 어떻게 기후변화 관련 공개가 결정되고, 준비되며, 발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수요구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CCRF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직들은 필수요구사항들을 관련 가이드스와 설명자료를 참조해 완전히 그리고 충실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영향

1.9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다양한 방식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CCRF에 담긴 필수요구사항은 가능한 한 현존하는 기준, 모델과 관행에 보조를 맞추며, 이로부터 관련 원칙을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IASB, 그것의 전임 기구나 해당 국가에 의해 공포되거나 위임되어 수립된 재무보고 기준, 원칙, 계획안과 토론 문서들

* 기후변화 관련 정보에 관한 규제 당국이 공포한 법률과 가이드스

*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그리고 전략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조직에 의해 이미 진행 중인 활동에 입각한 기업 기후변화 관련 공개 중 좋은 관행

* 기업 보고 모델 중 발전 사례

* CDSB 위원들과 세계자연연구소 온실가스협약팀, 온실가스협약 : 기업회계와 보고기준(수정판) 개발자들, 그리고 관련 지역 프로그램 협약과 국제표준화기구 ISO 14064-1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 정량화 및 보고에 대한 조직 수준의 지침 명시” 등 표준화 단체의 작업

4 IASB Exposure Draft of An improve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May 2008), Chapter 1, paragraph OB2.

5 CDSB Basis for Conclusions document May2009, paragraphs 4.3 ? 4.4 and the UK Accounting Standards Board December 1999Statement of Principles for Financial Reporting Chapter 1.

주류 재무보고서

1.10 주류 재무보고서는 특정 조직이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회사, 법률 준수 또는 증권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적인 결과를 발표하도록 요구되는 연간보고 패키지입니다. 주류 재무보고서는 통상 공공연히 이용 가능합니다. 현재 혹은 미래의 투자자에게 주류 재무보고서는 조직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따로 따로 발행되는 자료와는 다릅니다. 회사가 주류 재무보고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하는 정확한 규정은 나라별로 다릅니다. 사법권으로 주류 보고 필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리스트를 나열하는 건 이 문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2001년 회사법

* 싱가포르 회사법

* 뉴질랜드 2003년 회사법

* 미국 증권 및 주식거래위원회
규제 S-K

* 영국 2006년 회사법

* 일본 금융기관 및 증권거래법

*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제 1606/2002

1.11 주류 재무보고서는 다음을 담고 있습니다.

* 재무제표는 중요한 재무 명세서로서, 국제 회계기준 (IFRS)⁶이나 국가별 기준, 또는 지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과 같이 재무보고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주석과 함께 작성됩니다.

* 기타 재무보고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로서, “재무제표 전체의 해석을 돕거나 이용자가 경제적 결정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⁷ 기타 재무보고의 핵심부분은 경영진단의견서 (MD&A)로 불리는 사업보고서입니다. CCRF는 경영진단의견서⁸ 및 다양한 이름 아래 경영진단의견서에 상응하는 보고들을 모두 묶어 “사업보고서”라는 용어로 지칭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에 공개된 수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정보를 생성하는 조건과 사건을 설명함으로써 재무제표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기업체와 그 성과에 대한 비재무적인 정보, 즉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담습니다.⁹

1.12 CCRF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주류 재무보고서 안에 담거나 결부시키기 위하여 개발되었지만 기후변화나 기후변화를 완화하거나 적응하는 활동의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 안에 평가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지침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

1.13 CCRF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조직은 감사 여부에 상관없이 주류 재무보고서 내 모든 진술과 공개에 어울리는 엄격함과 경영 책임을 적용하기를 기대 받게 됩니다. 국제감사기준 (ISA 720) 아래, 재무제표 감사자는 감사 재무제표에 담긴 정보를 읽고, 정보와 감사된 재무제표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은 점을 찾아내고 공개 내용에서 사실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봅니다. 보통, 주류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관련 공개를 포함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사업무의 최소 수준이 결정됩니다.

1.14 최소 수준의 감사업무를 넘어 검증을 위하여, CDSB는 조직으로 하여금 CCRF에 따라 발표한 공개에 대하여 기존의 검증 기준을 참고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적절한 검증 방법을 상의하게끔 장려하고 있는데, 그 검증 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검증업무기준 (ISAE) 3000¹⁰

* 국제표준화기구 ISO 14064-3:2006¹¹

* AccountAbility의 AA1000 검증 기준

6 국제회계기준 1, 재무제표 발표 항목 9에서는 IFRS를 채택한 사법권 내 “재무제표”를 “단체의 재무 상태 및 재무 실적을 체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7 Preface 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paragraph 7.

8 IASB는 사업보고서의 역할, 한도와 목적을 검토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토의자료를 2009년 6월에 발간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원칙이 사업보고서 개발과 관련이 있는 한 CCRF는 토의자료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9 IASB Exposure Draft on Management Commentary, June 2009, paragraphs 15 & 16

1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11 온실가스 발표에 대한 확인과 검증에 대한 지침이 들어있는 세부사항

2장 필수요구사항

소개

2.1 목적과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CCRF는 필수요구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필수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정

조직은 CCRF 아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그리고 기후변화가 조직의 전략 목표에 어떻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의 범주에 따라 공개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준비

공개는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그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3. 발표

공개는 투자자들이 그 내용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핵심 필수요구사항들은 더욱 세부적인 필수요구사항, 가이드스 및 설명자료와 함께 아래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끝에는 필수요구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2.2 필수요구사항은 **굵은 기울임 꼴**로 소개되며 그 외 모든 다른 부분들은 가

이던스와 설명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필수요구사항을 완전히, 그리고 충실히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함께 읽고 적용해야 합니다.

*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지표들을 설명하고 있는 3장은 필수요구사항에 맞추어 공고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에 적용해야 합니다.

*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4장을 공개 시에 감안해야 합니다.

* 필수요구사항에 수반된 가이드스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결정 시 필수요구사항

2.3 조직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그리고 기후변화가 조직의 전략 목표에 어떻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포함한 프로세스를 거쳐 중요한 내용의 범주에 따라 CCRF를 통한 정보공개를 결정해야 합니다.

2.4 필수요구사항의 목적은 다음을 위한 판단을 적용하여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조직의 사업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 CCRF의 모든 필수요구사항과 투자자, 경영과 규제당국의 필요를 조건으로 하거나

고려하여, 가장 중요하며 적절한 정보를 식별해 내기 위해서입니다.

내용

2.5 공개는 CCRF 4장에 수록된 필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

2.6 공개는 정보의 주요한 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2.7 공개는 3장에 있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질적 지표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 유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발표되어야 합니다.

경영진 관점

2.8 공개에는 조직의 전략과 목적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이 담겨야 합니다.

2.9 일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경영진에게 중요한 정보는, 조직의 재무적 성과와 전망을 평가하기 위해 주류 재무보고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조직의 전략, 특히 운영 성과의 질적¹² 양적 요인, 고객, 브랜드와 혁신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라는 맥락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조직의 재무성과와 조건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개는 다음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¹² IASB Exposure Draft on Management Commentary, June 2009 paragraph 14.

* 경영진이 회사의 전략과 목적과 목표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외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연결할 때,

* 시간적도, 경향, 우선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행동 우선 순위를 설명할 때¹³,

* 기후변화 관련 이슈 관리가 어떻게 판매, 비용, 자금의 흐름과 상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할 때,

* 발생된 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 뿐만 아니라, 왜 그 일이 발생했는지를 대한 경영진의 생각과 조직의 미래를 위해 그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생각을 설명할 때¹⁴,

* 기업의 기후변화 전략, 재무성과, 조직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사이의 연관을 보여줄 때.

2.10 기업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후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에는 다음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협하거나 돕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위험과 기회,

* 다음에 열거하는 영향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실제적 그리고 잠재적 영향.

- 가용한 자원

-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관계
(예 : 공급사)

- 조직의 혁신 역량

- 상표와 평판의 결과

- 조직의 재정운용,

자금의 흐름과 재정상태

규제 관점

2.11 공개는 재무보고 또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CRF의 필수요구사항과 규제 요건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돌의 본질과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준비 시 필수사항

2.12 공개는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그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3 필수요구사항의 목적은 일관성 있는 정보의 보고를 통해 보고 기간, 조직 그리고 산업 부문 사이의 비교가능성을 높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2.14 비교가능성¹⁵은 이용자로 하여금 두 정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

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질입니다. 일관성은 한 기관 내에서 여러 기간 동안 이든 또는 여러 기관에 걸쳐 단일한 기간이든, 동일한 정책과 절차를 사용한다는 걸 말합니다. 비교가능성은 투자자에게 정보의 가치를 제고하기 때문에 이 필수요구사항의 목표입니다. 지속성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2.15 CCRF 적용 초기에는 CCRF에 따라 제공되는 기업과 산업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제한되고, 공시 접근 방법과 관행의 발전이 지체될 수 있음을 CDSB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관 내의 기간간 비교가능성은 달성가능하며, 이는 무엇보다 기후변화 관련 보고에 전년과 대비해 일관된 접근법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일관성 있는 기준과 정책에 따라서 성과 측정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시간이 흘러도 공개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과 측정, 지표들, 기준들과 정책들은 보고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적절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실적 척도, 지표, 기준 및 정책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의 이유와 효과를 밝히고 항목 2.39에 나와있는 대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필수요구사항을 지켜 설명해야 합니다.

13 IASB Exposure Draft on Management Commentary, June 2009, paragraph 27.

14 IASB Exposure Draft on Management Commentary, June 2009, paragraph 11.

15 CCRF에 사용된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 내용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은 IASB의 2008년 공개초안(Improve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QC16 ~ QC19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미래 전망 및 과거 실적

2.16 CCRF 하에서 공개는 투자자들이 조직의 과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전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17 공개¹⁶는 현재, 과거와 미래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미래 성과, 위치와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향과 요소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정보¹⁷를 제공하는 것에는 조직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 경영진의 관점, 기업이 잡고 있는 방향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미래 전망 정보에는 경영진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향, 불확실성과 기타 요인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위험과 기회 그리고 조직의 장단기 전망에 대해 표현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미래 전망 정보는 조직의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나타내 줄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고려한 조직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는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규제적·법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전망 정보에는 중요한 가정을 포함, 주의 문서와 공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고 기간

2.18 정보는 주류 재무보고서가 다루는 기간과 동일하게, 또는 열 두달을 기준으로 매년 제공되어야 합니다.

2.19 위 필수요구사항의 목적은 최소한 일년에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해당 정보의 영향력이 감소되기 전에, 의사결정권자가 적시에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규제적인 요건 아래에서 작성된 정보가 CCRF 하에서 공개를 위해 사용될 경우에는, 그리고 규제당국에 의해 명기된 보고기간이 주류 보고서의 보고기간과 다를 경우에도, 규제당국에 의해 명기된 보고기간은 주류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기간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경계

2.20 공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조직의 경계에 대한 CCRF의 권고사항의 적용을 받는데, 통합 재무제표 대상 조직에 대하여 발표됩니다.

2.21 통합 재무제표 대상 모든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조직에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하여 항목 2.22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누락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누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영진의 최대 추정치와 함께 명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준수 확인서

2.22 공개 내용에는 CCRF의 필수사항 준수 확인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 의하여 모든 필수사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또는 일부분만 지킬 수 없는 경우 둘다 그 사항을 밝히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조직의 준수 상황에 대한 정보, 필수사항을 완전히 적용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록해야 합니다.

2.23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에는 지킬 수 없는 필수요구사항을 밝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왜 준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담겨야 합니다. 필수요구사항을 지키는 데 실패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와 3장에서의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을 제대로 적용함에 따라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누락된 경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해가능성의 특징 (항목 2.28과 3.20)을 보면, 이용자가 혼자의 힘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공개 내용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되는 것은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련된 경우, 충실한 소개의 정의를 보면, 누락의 원인과 정도, 실수 및 불확실성이 준수 확인서에서 명확히 설명될 경우 필수요구사항이 지켜졌다고 보게 됩니다. (항목 3.19)

16 이번 안내서는 2009년 6월 발간된 사업보고서에 관한 IASB의 공개초안 17~19 단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7 특정 국가들은 미래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의 공개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예: The Ontario Securities Commission Staff Notice 51-330 (http://www.osc.gov.on.ca/en/SecuritiesLaw_csa_20091120_51_330_forward_looking.htm)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 경계

2.24 준수 확인서는 CCRF 하에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 관련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 경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며, 특정 보고 기간으로부터 다음 기간까지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의 경계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25 4장이 CCRF에 따라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의 경계에 대하여 명시했다면, 항목 2.22는 명시사항들이 담긴 준수 확인서를 수록합니다.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 경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규제 필수요구사항이 CCRF 필수요구사항의 준수에 우선하거나 CCRF의 필수요구사항 준수에 이용된 경우에는 공개는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 규제 필수요구사항(들)을 명확히 언급해야 합니다.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 경계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그 변경 사항의 이유와 결과는 항목 2.39에 나와있는 대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필수요구사항의 부분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발표시 필수요구사항

2.26 공개 내용은 투자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발표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2.27 정보는 이해가능하고 검증가능할 경우 유용하며, 공개시 사용된 가정의 근거와 결과는 설명될 경우에 유용합니다.

2.28 이해가능성¹⁸은 이용자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의 질입니다. 이해가능성은 정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되고 특성화되고 발표될 때 제고됩니다. 비교가능성 (항목 2.14)도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상당 부분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임에도 몇몇 이용자들이 도움 없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재무보고서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완화,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기술적인 언어는 CCRF 하에서 발표되는 공개에서의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공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평이한 언어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2.29 검증가능성¹⁹은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가 충실히 소개²⁰되었다는 걸 보증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의 특징입니다. 검증가능한 정보의 특징으로는 모니터링한 자료에서부터 공개한 정보까지의 경과를 충분히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를 지닌다는 점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는 하나의 추정치일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양의 범위와 관련 확률로도 검증될 수 있습니다. 검증은 직접·간접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확인의 대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측정된 양 (예를 들어, 지속적인 배출량 측정기술로 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검증은 동일한 방법론을 참고하여 투입량과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가능성은 각자 다른 독립적인 관찰자들이 보기에 공개 내용에서 자료 상의 실수나 편견이 없음을, 또는 자료 상의 실수나 편견 없이 적절한 확인과 측정 방법이 이용되었음에 대하여 완전한 의견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공개 관행이 발전 중에 있으며 불확실성이라는 조건 아래서 공개가 준비될 가능성이 주어졌을지언정, 이용자로 하여금 누락사항의 요소와 정도, 가정과 불확실성 그리고 이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인 검증이 가능한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공개 (항목 2.22에서 요구한 준비 확인서도 포함하여)되어야 합니다.

18 CCRF에 사용된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 내용의 이해가능성(understandability)이란 용어는 IASB의 2008년 공개초안(Improve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QC23 ~ QC24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19 CCRF에 사용된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 내용의 검증가능성(verifiability)이란 용어는 IASB의 2008년 공개초안(Improved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QC20 ~ QC21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20 충실한 소개에 대한 지침은 3장, 3.13 ~ 3.19 에서 제공됩니다.

발표 형식

2.30 공개 내용은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2.31 정보 발표 형식은 조직마다 각자 사업의 성격, 운영하고 있는 경영과 규제적 환경에 의해 채택된 전략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도 다음의 권고사항이 적용됩니다.

장려할 점	지양할 점
사업 경영을 위해 경영진이 이용하듯이, 공개 대상 조직의 과거 성과와 미래 전망에 통찰을 주는 분석	분석 없이 재무 정보를 되풀이하는 표준화된 공식
결정에서 CCRF 필수요구사항 적용을 통해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집중	공개 대상 조직의 특정 관행과 상황에 관련 없는 일반론적인 공개
관련 재무제표와 부합한 공개	재무제표에서 설명되고 공개된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통찰이나 직접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걸 중복하는 공개

정보의 위치

2.32 정보는 조직의 전략, 운영과 기후 변화의 영향 사이의 연관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와 방법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2.33 규제 필수요구사항에서 따로 규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는 주류 재무보고서의 사업보고서 내에 수록되거나 사업보고서와 상호참조되어야 합니다. 다른 문서에서 정보의 상호참조나 배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보 내용의 길이 관리를 위해, 그리고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서에서 정보가 상호참조될 경우에는 이해가능성의 특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맥락에 대한 정보와 세부사항을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2.28)

2.34 사업보고서 내에 기후변화 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세가지 주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 부분에 따로 수록하는 방법
- 위험 부분 안에 부주제로 수록하는 방법
-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토의를 사업보고서 내 다양한 부분에 분산 배치하여 기업 전략, 자본, 유동성, 핵심 성과 요인 및 전망과 같이 회사 사업의 다른 측면과 기후변화 사이의 연관을 보여주는 방법²¹

2.35 위의 정보를 수록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보고서 내 적절한 부분 안에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토의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측정과 지표

2.36 조직은 경영진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향한 진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성과측정과 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2.37 진전 추이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수량화된, 절대적이며 표준화된 측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성과와 재무성과 사이의 연관을 정보가 전달할 경우 정보는 결정의 질을 제고합니다. 성과측정은 조직의 중요한 성공 요인을 반영하는 수량화된 측정방법입니다. 지표는 사업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글로 설명되기도 하고 실적에 대해 간접적인 증거²²를 보여주는 수량적인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²¹ Building a Better MD&A: Climate Change Disclosures, A Canadian Performance Reporting Board Publication (2008) for the Canadian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CICA), p. 5.

²² IASB Exposure Draft on Management Commentary, June 2009, paragraph 36.

2.38 성과측정과 지표를 이용하는 공개는 다음의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 성과측정과 지표가 명확히 기술되고, 경영진이 목표를 향한 진전 추이를 가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같을 때.
- 진전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성과지표를 향한 목표와 목적이 명확히 언급되고 있을 때.
- 측정/지표가 어떻게 정의되고 산정되고 있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때.
- 지난 보고 기간의 결과를 이번 보고 기간의 결과 옆에 배치하면서 매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향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때. 성과측정과 지표의 근거와 목적과 목표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2.39에서 요구하고 있는 비교 분석의 일부분으로 그 변경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

2.39 공개는 해마다 접근 및 결과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2.40 비교 분석과 분석 결과로 제시되는 설명은 다음을 다루어야 합니다.

- 보고기간 사이에 조직의 전략 분석과 지배구조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

· 성과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성과측정과 지표의 근거와 목적, 설명에 생긴 변경 사항, 또는 그 정의 및 산정에 생긴 변경 사항

· 지난 보고 기간에 발표된 미래 전망 공개 내용에 부족했는지, 충족했는지, 아니면 넘었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 지난 보고 기간의 미래 전망 공개가 얼마나 입증되었는지의 정도²³

· 온실가스 배출량, 조직의 경계 및 기타 결과에 생긴 변경 사항 및 보고 기간 사이에 생긴 변경 사항의 원인 등, 보고 기간 사이에 대한 비교 결과.

세분화

2.41 공개는 조직의 관련 재무제표와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가 분할 정보를 담고 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공개에 해당 세분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2.42 정보의 세분화는 투자자의 이해와 결정을 도와줍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분할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4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²³ IASB Exposure Draft on Management Commentary, June 2009, paragraph 19.

필수요구사항 요약

CDSB 기후변화보고 프레임워크 필수요구사항 요약

결정		준비		발표	
조직은 CCRF 아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그리고 기후변화가 조직의 전략 목표에 어떻게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혹은 영향을 끼칠 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의 범주에 따라 공개를 결정해야 합니다. (2.3)		공개는 지속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그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2.12)		공개 내용은 투자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발표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2.26)	
모든 필수요구사항은 3, 4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데, 3장은 필수요구사항에 따라 공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4장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2.5)	공개는 CCRF 4장에 수록된 필수요구사항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 전망 및 과거실적 (2.16)	CCRF 하에서 공개는 투자자들이 조직의 과거 실적뿐 아니라 미래 전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표 형식 (2.30)	공개 내용은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 (2.6)	공개는 대상은 정보의 주 이용자로서 투자자에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보고 기간 (2.18)	정보는 주류 재무보고서가 다루는 기간과 동일하게, 또는 열 두달을 기준으로 매년 제공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위치 (2.32)	정보는 조직의 전략, 운영과 기후변화의 영향 사이의 연관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와 방법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경영진 관점 (2.8)	공개에는 조직의 전략과 목적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이 담겨야 합니다.	조직 경계 (2.20)	공개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 조직의 범위에 대한 CCRF의 권고사항의 적용을 받는데, 통합 재무제표 대상 조직에 대하여 발표됩니다.	성과 측정과 지표 (2.36)	조직은 경영진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목표를 향한 진전 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성과 측정과 지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규제 관점 (2.11)	공개는 재무보고 또는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CCRF의 필수요구사항과 규제 요건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돌의 본질과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준수 확인서 (2.22)	공개 내용에는 CCRF의 필수요구사항 준수 확인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 의하여 모든 필수요구사항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또는 일부분만 지킬 수 없는 경우 둘다 그 사항을 밝히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조직의 준수 상황에 대한 정보, 필수요구사항을 완전히 적용할 것에 대한 계획을 수록해야 합니다.	비교 분석 (2.39)	공개는 해마다 접근 및 결과의 변화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보 준비를 위해 사용된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 경계 (2.24)	준수 확인서는 CCRF 하에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된 관련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 경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며, 특정 보고 기간으로부터 다음 기간까지 기준들, 정책들 및 조직의 경계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세분화 (2.41)	공개는 조직의 관련 재무제표와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가 분할 정보를 담고 있다면 기후변화에 관한 공개에 해당 세분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3장 의사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들

소개

3.1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유용한 정도는 정보의 질적 특징에 달려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공개가 유용하려면 이 장에서 설명할 질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3.2 이 장에서 설명하는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 (“특징”)은 CCRF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공개를 결정하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3.3 특징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공개를 도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영진이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도울 수 있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결합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징을 제공하는 출처

3.4 많은 프레임워크와 기준들은 보고 결과가 기반을 두어야 할 특징이나 원칙을 명시해야 합니다. CCRF는 다음의 출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결정에 유용한 재무보고 정보의 질적인 특징과 제한사항은 2008년 5월 IASB의 ‘재무보고 구상 프레임워크 개선 초안’ (IASB ED 2008)²⁴에서

확립되었습니다. CCRF의 1.0판 발간 즈음하여, CDSB는 IASB ED 2008의 권고사항이 비록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어도 CCRF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IASB의 생각²⁵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경험을 반영하여 CDSB는 IASB가 마련한, 기후변화 관련 공개 시 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징을 조정했습니다.

- 세계자원연구소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가 개발한 온실가스협약 : 기업회계및보고기준 (개정판) 및 관련 지역프로그램협약

-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64-1-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의 정량화 및 보고에 대한 조직 수준 지침 명시

3.5 IASB의 2008년 초안에 부합하기 위하여, CCRF는 정보의 유용성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특징과 “강화하는” 특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CCRF는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한정하는 중대성과 비용이라는 “제한하는” 특징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²⁶

3.6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하

고 충실히 소개되어야 합니다. 적절성과 충실한 소개는 정보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의사결정의 유용성에 기여하도록 함께 작동됩니다. 적절성의 경우, 투자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가장 유용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정보 제공자가 찾게 도와줍니다. 충실한 소개의 경우, 적절한 정보가 어떻게 설명되고 전달되어 가장 충실히 소개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적절성²⁷

3.7 정보가 이용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적절한 것입니다. 예상의 가치나 확증적인 가치 또는 둘 다 지니고 있다면 기후변화 관련 정보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그 정보가 과거에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미래에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보는 일부 이용자가 그 정보를 활용하지 않기로 하거나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결정에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됩니다.

24 http://www.iasb.org/NR/rdonlyres/464C50D6-00FD-4BE7-A6FF-1BEAD353CD97/0/conceptual_framework_exposure_draft.pdf

25 프로젝트와 관련한 최신정보는 http://www.fasb.org/project/cf_phase-a.shtml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26 CCRF에 사용된 기본적 특징(fundamental characteristics)이란 용어는 IASB 2008년 공개초안의 QC14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27 CCRF에 사용된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 내용의 적절성(relevance)이란 용어는 IASB 2008년 공개초안의 QC3 ~ QC6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3.8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가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예상을 형성하는 예측 과정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 정보는 예상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예상의 가치를 지니기 위하여 정보 자체가 예측가능하거나 또는 분명한 전망의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자의 예측 과정에서 유용한 기여만 하면 됩니다.

3.9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가 이전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과거나 현재의 예측을 따르거나 변경한다면 그 정보는 확증의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과거의 예측을 따르는 정보는 이전에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보가 예측을 변경하게 된다면 가능한 결과의 범위의 확률도 변경하게 됩니다.

3.10 정보의 예상과 확인의 역할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상의 가치를 지닌 정보가 확증의 가치도 지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사업전략을 달성하는 능력에 관한 회사의 최근 예상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기회를 이용하고 미래의 불리한 상황에 반응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같은 정보가 그 능력에 대한 이용자의 과거 예측을 확인하거나 수정해줍니다.

3.11 투자자는 다양한 요소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가 적절한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인 보고의 보급
- 투자자 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입증된 정보를 요구.
- 환경 문제의 재무상, 운영상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법률의 빠른 발달.

3.12 CCRF의 필수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공개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진은 적절성의 특징을 적용함으로써 조직의 운영 성과나 재무성과, 자금의 흐름, 고객, 상표 및 조직의 전략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내용의 하나하나의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충실한 소개²⁸

3.13 적절한 정보가 완전히 그리고 중립적으로, 또한 자료 상의 실수가 없도록 설명된다면 그 정보는 충실하게 소개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질적(예를 들어, 가능한 효과의 요소를 글로써 풀어낸다든지) 및 양적(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인 것을 포함해 정보는 여러 방법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14 공개에서 소개하려는 사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으면서, 정보를 잘못되게 만들거나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누락하지 않는다면 그 소개는 완전한 것입니다.

3.15 중립성은 이미 결정된 결과나 특정 행위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편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립적인 정

보는 편견이 없으므로 정보가 소개하고자 하는 사안을 충실히 소개합니다. 중립적인 정보는 전달하려는 이미지가 특정 방향으로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기후변화 관련 공개가 이미 결정된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에 정보의 취사선택을 통하여 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면 중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 관련 공개가 중립적이라고 하여 행위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이나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적절한 기후변화 관련 공개는 정의대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역량을 지닙니다.

3.16 사업보고서 용도로, 정보가 좋은 뉴스를 불필요하게 과잉 강조하지 않고 균등하게 좋은 면과 나쁜 면 둘 다 다룬다면 그 정보는 편견에서 벗어난 것, 즉 “균형 잡혀 있는 것입니다.”²⁹

3.17 기후변화 관련 공개는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의 조건 아래서 만들어지고 추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기반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관련 공개의 맥락에서 충실한 소개는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락, 가정 및 불확실성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가용한 최적의 정보를 반영하는 적절하고 중립적인 요소에 추정의 기반을 두면 정보를 충실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실한 소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보고하는 정보 속에 불확실성의 정도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²⁸ CCRF에 사용된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 내용의 충실한 공개(faithful representation)란 용어는 IASB 2008년 공개초안의 QC7 ~ QC11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²⁹ IASB Discussion Paper on Management Commentary, 2005, paragraph 80.

3.18 사업보고서를 목적으로 정보를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실수로부터 자유롭고 충실한 소개로 여겨집니다. 정보가 예를 들어, 사실에 입각한 전략, 계획 및 위험 분석을 충실하게 소개한다면 그 정보는 지원가능한 것입니다. 측정 불확실성에 관한 세부사항이 중요한 정보를 지닙니다. “투자자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그 정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사업보고서]는 이용자들이 불확실성의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주의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 전망 정보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경영진으로 하여금 미래 전망 정보에 관한 자료상의 가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합니다.”³⁰

3.19 기후변화 관련 공개 관행과 기준이 발전하는 동안 CCRF는 모든 적절한 정보가 다 실수에서 자유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공개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불확실성 아래에서 준비된 경우 준수확인서(항목 2.22)에 질적 및 양적 누락, 실수 및 불확실성의 요소와 정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징 제고³¹

3.20 특징을 제고하는 건 비교가능성, 시의적절성, 이해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적절하고 충실히 소개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보완합니다. 특징의 제고에 관한 적용은 이미 지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질적 특징을 제고하는 건 다른 특징을 최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희생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충실한 소개의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교가능성을 일시적으로 줄일 가치가 있습니다. 특징을 제고시키는 건 CCRF의 필수요구사항 안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가능성 - 항목 2.14-2.15
- 시의적절성 - 항목 2.19
- 이해가능성 - 항목 2.28
- 검증가능성 - 항목 2.29

제한요소 - 중대성과 비용

3.21 제한요소의 목적은 기본적이면서 특징을 제고시키는 충실한 적용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의 의사결정 유용성을 최대화하는 데 무관한 잡다한 사항과 비합리적인 비용의 부담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성³²

3.22 재무보고에서 정보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오독이 기관의 재무적 정보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정보는 중대성을 가집

니다. 중대성은 항목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된 특정 상황에서 판단되는 그 항목의 요소와 수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보의 특정 유형이 중대성이 되는지에 대한 일률적으로 정량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대한 누락, 허위 기재 또는 오독은 불완전하고 편향된,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정보가 의도한 바를 충실히 소개하고 있는지 고려할 때, 중대성을 감안하는 건 중요합니다.

3.23 중대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모든 질적 특징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으로써 기능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대성은, 정보가 사용자에게 적절한 예상의 가치 혹은 확증의 가치를 충분히 가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 그리고 충분히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의도한 [내용]을 충실히 소개하기 위해 실수로부터 자유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만 한다.”³³

3.24 CCRF를 목적상, 중대성의 특징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회사의 재무적 상황이나/혹은 그 전략을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거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경향과 중요한 사건을 투자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운용가능한 정보 필터³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0 IASB Discussion Paper on Management Commentary, 2005, paragraphs 75 - 76.

31 CCRF에 적용된 증대되는 정보공개 원칙(enhancing Disclosure Principles)에 대한 설명은 IASB 2008년 공개초안의 QC15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32 CCRF에 사용된 중대성(materiality)의 의미는 IASB 2008년 공개초안의 QC28 단락에 기초하거나 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33 IASB ED 2008 paragraph QC32.

34 Smith, J. A., Morreale, M., & Mariani, M.E., Climate change disclosure: Moving towards a brave new world, Capital Markets Law Journal, August 2008.

3.25 대성 “제한”의 목적은, 주요 경향과 사건을 모호하게 만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세부사항이나 “중대하지 않은 잡다한 사항”³⁵을 공개에서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결정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CCRF의 필수요구사항과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3.26 IASB 2008년 ED의 항목 QC 28에서 언급한 대로, 정보가 중대성을 띄는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량적인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CRF는 기후변화 관련 공개의 맥락에서 무엇이 중대성인지를 식별하는 정량적인 테스트나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가 중대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보고 시점에서 지배적인 상황에 달려 있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점에 일부분 기인하기도 하고 “기후변화 영향의 시점과 규모에 대하여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³⁶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의 경우, 지배적인 상황은 보고 회사의 부문, 운영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 가격, 과학적인 발견, 현행 또는 다가올 규제 및 소비자 행동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27 국제회계기준 1 (IAS 1)³⁷의 기술적 개요는 중대성의 규모와 특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또는 총체적으로 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내린 경제적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면, 항목의 누락이나 허위기재는 중대성을 가집니다. 주변 환경에서 누락이나 허위기재의 규모와 특징을 판단하게 되는데, 중대성은 이 규모와 특징에 달려 있습니다. 항목의 규모나 특성, 또는 둘 다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규모에 의한 중대성은 절대적이고 표준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을 다룹니다.
- 특징에 의한 중대성은 기후변화 관련 사건, 위험 및 불확정 책임의 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조직의 전략과 같은 정보를 다룹니다.

기술적 개요에서는 특정 사안의 중대성을 개별적이고 통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8 입법자 또는 정책입안자가 비재무보고³⁸ 또는 사업보고서 내에서 중대성을 결정하는 일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

경우, 비록 CCRF가 중대성을 다루는 모든 지침과의 호환성을 목표로 할지라도, 해당 지침이 CCRF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35 Rising to the Challenge - A review of narrative reporting by UK listed companies, Accounting Standards Board <http://www.frc.org.uk/images/uploaded/documents/Rising%20to%20the%20challenge%20October%202009.pdf>

36 CDP Global 500 Report 2008:86.

37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see ? <http://www.iasb.org/NR/rdonlyres/80B373BF-BB16-45AB-B3F7-8385CD4979EA/0/IAS1.pdf>

38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 [Release Nos.33-9106; 34-61469; FR-82], hereinafter referred to as “SEC interpretive guidance” and available at www.sec.gov/rules/interp/2010/33-9106.pdf

3.29 중대성을 결정하는 테스트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자사의 상황을 평가하고 CCRF의 필수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공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음의 표는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정보가 중대하다고 지시하는 요인	정보가 중대하지 않다고 지시하는 요인
정보가 조직에 투자하거나 계속 투자할 지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 투자자에 영향을 줍니다.	
현재는 조직이나 그 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정보로, 그 공개 조직이 특히 운영 주거나 투자 주기가 긴 산업에 속해있거나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합리적으로 볼 때, 알려진 경향, 요구, 의무, 사건 또는 불확실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영진이 생각합니다.
정보를 통하여 공개 조직의 재정상태, 유동성, 재정상태의 변화 및 운영 결과에 대한 이해가 늘어납니다. ⁴⁰	재정상태나 운영 결과에 대한 중대한 영향이 있음직하지 않습니다.

3.30 불확실한 사건의 중요성과 시기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예상되는 기간을 제공할 수 없다면, 경영진은 상황을 평가하는 데의 어려움을 밝혀야 합니다. 불확실할 경우 경영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며 어떤 불확실성⁴¹에 대하여도 적절한 공개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⁴²

3.31 재무보고는 비용을 수반하지만, 보고가 주는 혜택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얻는 혜택이 관련 비용을 정당화되는지를 평가하는 건 보통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이자면, 혜택과 비용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건 흔히 불완전합니다.

3.32 정보 제공 비용에는 정보 수집 및 처리 비용, 정보 확인 비용 및 정보 전파 비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용자는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게

됩니다.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누락할 때도 비용이 수반되는데, 여기에는 이용자가 재무보고 내 불완전한 자료나 다른 곳으로부터의 가용 자료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추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3.33 재무보고는 자본공급자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자본 시장의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자본의 비용을 더 낮춥니다. 개별 기관들도 혜택을 누리는데, 그 혜택으로는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홍보에 호의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자본의 비용이 낮아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또한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재무 정보가 일반적인 목적의 재무보고를 위하여 준비된 정보에 적어도 일부분 바탕을 둬으로써 경영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점도 있습니다.

3.34 비용에 의한 제한을 적용하는 데에는 재무 정보의 혜택이 정보를 제공

하고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이 정당화되는지 평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평가를 할 때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질적 특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희생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3.35 적절하고 충실한 소개가 가능한 정보는 그 의미대로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며 따라서 비용 하나만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정보의 수집이 균형에 맞지 않는 비용을 불러일으킬 경우, 조직은 항목 2.22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 확인서를 통하여 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조직은 균형에 맞지 않는 비용 없이도 CCRF의 필요사항과 부합되는, 추정된 정보나 질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결과물인 공개는 “특징,” 그 중에서도 충실한 소개의 특징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9 From the SEC interpretive guidance

40 ibid

41 ibid

42 CCRF는 비용(cost)에 대한 의미를 IASB 2008년 공개초안의 QC29 ~ 31, 33 단락에 근거하거나 인용하였습니다.

4장 공개내용 필수요구사항

소개

4.1 CCRF에 따라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공개의 초점과 내용은 경영진의 판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 활용 및 사실과 조직의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CCRF의 필수요구사항은, 기후변화가 어떻게 경영진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정보가 공개에 확실히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이 장에 정리된 내용 필수요구사항은, 투자자에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주요 종류와 투자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조직 사이에 최소 수준의 비교가능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분류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내용 필수요구사항은 2장의 필수요구사항에 관련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결정할 때 이 장의 필수요구사항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향

4.2 이 장은 규제 요건 및 다음과 같은 기후변화 공개 시책에 전형적으로 반영된 정보의 종류를 반영합니다.

- 탄소공개프로젝트의 연간 정보 요구
- 세계자연연구소의 온실가스협약 및 관련 국가프로그램 및 지역프로그램

-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 정량화 및 보고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지침, ISO 14064-1
- CERES의 2006년 10월 기후위험공개국제 프레임워크
- GRI의 G3 가이드라인
- 미국 SEC의 2010년 기후위험공개에 대한 해석지침⁴³

공개내용 필수요구사항 - 요약

4.3 공개에는 다음의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 전략 분석, 위험 및 지배구조 (아래의 항목 4.4 - 4.17을 확인하십시오) -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와 이 영향에 대처하는 지배구조 과정이 조직의 전략과 운영 실적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은 투자자들과 의사결정권자들이 조직의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온실가스 (GHG) 배출량 (아래의 항목 4.18 - 4.33을 확인하십시오) - 투자자들은 미래에 GHG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마련 시 생기는 위험을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량적 자료에 대한 필요를 제기해왔습니다.

전략 분석, 위험 및 지배구조

4.4 CCRF를 목적으로, 전략 분석은 다음의 둘 다를 다룹니다.

- 조직의 장기 및 단기 전략 목표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
- GHG 감축과 물리적 위험에 대한 적응을 포함,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의 장·단기 전략

4.5 전략 분석, 위험 및 지배구조에 관한 공개 내용은 아래 설명된 여섯 개의 주요 분류 안에 속합니다. 중복을 피하여 개별적으로보다는 통합되어 정보가 제공됩니다.

1. 전략 분석

4.6 전략 분석에 관한 공개에는 기후변화가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조직의 목표에 미치는 장기, 단기 영향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언급은 다음을 담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가 이미, 혹은 미래에 조직의 사업 전략에 영향을 끼치는지 경영진이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사안
- 조직에게 가장 적절하며 투자자에게 가장 유용한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알아내기 위하여 경영진이 의사결정에 관한 필수요구사항 (항목 2.3 - 2.11)을 적용한 방법에 대한 설명

43 <http://www.sec.gov/rules/interp/2010/33-9106.pdf>

· 경쟁력, 자원에 대한 접근, 재무성과 및 재정상태에서 기후변화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분석

·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상품 가치 및 명성, 소비자 신뢰와 고용인의 충성도와 같은 혁신 및 자원에서 기후변화가 전략적으로 의미하는 바.

· 지난 보고 이후 조직의 기후변화에 관한 입장에서 생긴 중대한 변화와 그 변화의 이유에 대한 설명

4.7 공개에는 자본과 운영 비용, 유동성, 의무, 채무 또는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같이, 기후변화 전략, 위험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의 재무적인 영향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담겨야 합니다. 재무적인 영향을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명시된 가정이나 시나리오에 따라 추정치가 범위의 형식으로 질적인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4.8 공개는 경영진이 회사의 전략 및 목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와 투자자의 결정을 위하여 외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연결할 때 유용합니다.⁴⁴ 정보가 투자자에게 “[기후변화 관련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판매 증진, 비용 감축, 자금의 원활한 흐름, 상표 가치 제고, 위험 관리 강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의 이야기”⁴⁵를 들려줄 때, 그리고 “기업 기후변화 전략, 재무성과와 GHG 배출량 감축 사이의 연관”⁴⁶을 보여줄 때 그 정보는 유용합니다.

2. 위험

4.9 위험에 관한 공개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현재 및 (장·단기적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위험에 대하여 조직이 노출된 바를 설명하고 질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3. 기회

4.10 기회에 관한 공개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현재 및 (장·단기적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기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질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4.11 위험 및 기회에 관한 공개가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만드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직이 위험 및 기회를 알아내고, 재무적인 의미를 포함, 그 위험과 기회가 사업에 영향을 주는 범위를 평가하는 데 이용하는 과정과 시스템을 설명하고, 주류 재무 보고서 내 다른 부분을 설명하거나 상호 참조.
- 조직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고객, 공급사, 시장을 통하여 위험 및 기회의 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
- 가치사슬을 포함, 조직의 사업에 대한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의미에 관한 추정치 정보.
- 위험 및 기회의 평가 기간과 그것이 언제 구체화될지에 대한 추정치
- 기후변화의 영향 아래 놓일 제품, 서비스, 시장 및 지역 인식

위험 및 기회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는 범위가 넓고 (예를 들어, 시장과 공급사슬에 영향을 준다든지) 직·간접적이며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현재나 미래의 규제 필수요구사항에 따른 규제 관련 위험 및 기회로 다음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나 가져오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GHG 배출량 제한
- 에너지 효율 기준
- 탄소세
- 공정 또는 제품 기준
- GHG 거래제도에 참여

- 기후변화의 물리적 영향에 따른 위험 및 기회로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나 가져오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기후패턴의 변화
- 해수면 상승
- 생물 다양성의 변화
- 가용 수자원의 변화
- 온도 변화
- 농업 생산량 및 작물 성장기의 변화

- 명성 관련 위험 및 기회
- 소송 관련 위험 및 기회

44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Inc (AICPA) (2008) "Assurance Services Executive Committee Whitepaper "The Shifting Paradigm in Business Reporting and Assurance" by Amy Pawlicki, Director of Business Reporting, Assurance & Advisory Services and MBRL, AICPA, On behalf of the AICPA Assurance Services Executive Committee.

45 Ethical Corporation February 2009 "Tell a Strategic Story" J Russell

46 Kolk, A., Levy, D. and Pinkse, J., Corporate Responses in an Emerging Climate Regime: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Commensuration of Carbon Disclosure - European Accounting Review, 17:4,719 - 745, 2008

4. 경영진의 행동

4.12 공개에는 조직의 GHG 배출량을 줄이려는 목표와, 목표를 향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위험, 기회 및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장·단기 전략이나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4.13 경영진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획의 요소 (예를 들어, 계획에 GHG 배출량 감축, 에너지 효율과/또는 다양화,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을 설명합니다.
- GHG 감축 목표 (설정된 경우)를 다음을 담아 설명합니다.
 - 목표 타입, 절대적인지 집약도 베이 스인지의 종류
 -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로 하는 시간척도
 - 조직의 범위 내 기준 연도 및 GHG 배출량, 그리고 목표 GHG의 그 해 배출원 또는 배출 활동 -기준 연도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평가를 시작한 첫 해입니다.
 - 기준 연도 배출량이 재산정되었거나, 소급되어 재산정될 경우나, 기준 연도가 재설정된 경우의 상황에 대한 설명
- 계획 아래 세워진 다른 목표 및 시간척도, 그 목표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계획의 적용 대상인 조직의 경계 및 GHG 배출원 또는 배출 활동을 명시합니다.

· 계획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활동과 투자, 그리고 계획 및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나 제한 요소를 설명합니다.

· 지난 번에 세워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전을 분석합니다.

· 지역별, 국가별, 세계적 또는 부문별 목표에 대한 진전을 분석합니다.

5. 미래 전망

4.14 조직의 전략에 대한, 또는 전략을 달성하는 데 일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시간척도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경향과 요소 등 장·단기 미래 전망에 관한 정보를 공개에 담아야 합니다.

4.15 미래 전망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경우 의사결정에 유용합니다.

-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며, 정보에 영향을 끼칠 어떤 불확실성이나 핵심적인 중속물이라도 공개합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미래 전망과 조직의 장기 목표 및 전략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 유기적인 성장이나 쇠퇴, 인수 또는 투자 회수, 그리고 운영에서의 변화와 같이 기회를 증진시키거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장기 전략 개발을 보고하고 있는 주류 재무보고서의 부분들을 설명하거나 상호 참

조합니다.

· GHG 감축이나 기후변화 적응은 조직의 성장, 미래 수입과/혹은 조직의 방향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저감이나 적응에 대한 투자나 비용의 추정치를 담습니다.

· GHG 감축/ 에너지 효율 예상과 관련된 비용 절감을 예측합니다.

6. 지배구조

4.16 공개에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식별, 관리, 관리기구 감독으로 배정되어 온 지배구조 과정과 조직의 자원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4.17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책임이 어떻게 대표되는지, 그리고 조직의 기후변화 전략을 실행하는 데 경영진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또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설명
- GHG 배출량 정보의 추이를 확인하고 기후변화 관련 공개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기본 정보 및 제어시스템의 특성과 신뢰성
- 조직의 기후변화 정보가 다른 재무보고 정보에서 쓰는 지배구조 과정과 공개 통제 및 절차와 같은 것의 적용을 받는가의 사항

온실가스 배출

소개

4.18 투자자들은 미래에 GHG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마련 시 생기는 위험을 기준에 맞추어 평가하고 분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정량적 자료에 대한 필요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조직들이 주류 재무보고 이외의 목적으로 자체 GHG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HG 배출량이 탄소공개프로젝트나 기후등기소, 또는 규제 필수요구사항에 따라 보고될 수 있습니다. CCRF는 가능한 한, 주류 재무보고 이외의 목적으로 측정 및 공개된 GHG 배출량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CCRF 하에서 GHG 배출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HG 배출량 내용 필수요구사항 - 요약

4.19 CCRF에는 GHG 배출량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두 가지 주요 필수요구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필수요구사항은 이 항목에 소개의 형식으로 요약되어 더욱 자세한 필수요구사항, 지침 및 설명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4.19.1 **절대적이고 표준화된 총 GHG 배출량은 조직을 위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4.19.2 **GHG 배출량의 결과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 경우, 그 변화를 불러일으킨 활동 및 변화의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

4.20 기존의 기준, 관행 및 규제 요건과 보조를 같이 하려는 목적에 맞게 CCRF는 GHG 배출량 산정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CCRF는 몇몇 기본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에서 지정된 GHG 배출량 산정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CCRF 용도로써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적 기준

국제적 기준은 공개적인 의견수렴과 적정한 과정을 통해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되어 왔습니다. 국제적 기준에는 국제기준에 기초하여 관련된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산업별 혹은 국가별 기준이 포함됩니다. CCRF 용도로써 국제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개발한 온실가스협약: 기업회계및보고기준 (개정판)- www.ghgprotocol.org에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ISO 14064-1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 정량화 및 보고에 대한 조직 수준의 지침 명시”- www.iso.org에 있습니다.

GHG 협약에 기초한 국가프로그램 및 지역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GHG멕시코프로그램
- 필리핀GHG회계및보고프로그램 (PhilGARP)
- 중국기업에너지보존및 GHG관리프로그램
- 브라질GHG협약프로그램
- 기후등기소의 자발적보고프로그램⁴⁷
- 인도 GHG인벤토리프로그램

GHG 협약에 기초한 산업 특정 가이드라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IPIECA의 GHG 배출량 보고를 위한 석유 산업가이드라인 (2003년)
- 알루미늄부문GHG협약
- 시멘트이산화탄소협약 : 시멘트업계용이산화탄소회계및보고기준

47 www.theclimateregistry.org

GHG 측정 및 보고를 요구하는 국가별 법안

의무거래제도에 수반된 모니터링 및 보고 가이드라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연합배출거래제도 - 유럽연합결정 2007년 7월 18일 2007/589/EC
- 지역온실가스계획 (RGGI)
- 뉴질랜드 배출거래제도
 - 의무거래규정의 예
 - US EPA 의무보고규정
 - 호주 국가온실및에너지보고규정
 - 일본 GHG모니터링및보고규정
 - 영국 탄소저감의무에너지효율제도⁴⁸

GHG 측정 및 보고 관련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침

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DEFRA/DECC 가이드라인 -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보고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

GHG 배출 분류

4.21 GHG 배출 분류 용도로써 CCRF는 GHG 협약에서 사용된 언어와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RF의 이 부분은 GHG 협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히 CCRF는, GHG 배출량을 “scope 1” 별로 나누어 직접적인 “scope 1” 배출량과 조직이 소비한 구매 전력 생산 시 나오는 간접적인 “scope 2” 배출, 그리고 기타 간접배출인 “scope 3”로 구분한 GHG 협약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GHG 협약에서 이런 방식으로 GHG 배출을 분류하는 건 가능한 한 조직이 이중으로 측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22 GHG 협약은, 협약을 준수하면서 보고하는 회사가 scope 1과 scope 2의 모든 GHG 배출량⁴⁹을 보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cope 3의 배출량을 보고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4.27에서 scope 3의 GHG 배출량 공개의 정의와 공개를 고려해야 할 상황을 정리하고 있지만, GHG 협약 및 아래에 나와있는 조직의 경계 설정 권고사항에 부합하기 위하여 CCRF의 공개 내용 필수요구사항에는 scope 1과 scope 2의 GHG 배출량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GHG 배출량 보고서 조직 경계 설정

4.23 항목 4.23-4.26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욱 많은 정보를 찾으려면 www.cdsb.net를 확인해주시오.

조직의 경계 설정 시 CCRF는 GHG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에 따르는 한편 재무보고에 쓰이는 경계에 맞추어 GHG 배출량 재무제표 제작 대상과 동일한 단체에 대하여 GHG 배출량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CCRF는, 기준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관성과 투명성을 촉진 및 증진시키기 위하여 회사들이 GHG 배출량 보고 시 조직의 경계를 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정의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필수보고사항은 배출량 결과를 준비해야 할 시설과 기관을 지정하고, GHG 협약은 그룹의 GHG 배출량 결과를 통합하기 위하여 재정통제, 운영통제, 또는 주식 소유 관련 접근을 이용할지를 모회사 경영진의 결정에 의존하는 데 비하여, CCRF는 단일한 방법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 및 주식 회계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AS/IFRS)의 필수요구사항⁵⁰에 근거하며, 그룹 내 기관이나 합작투자/지분할당사 내 지분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된 재무제표에 수록하는 방법에 부합합니다.

48 http://www.decc.gov.uk/en/content/cms/what_we_do/lc_uk/crc/crc.aspx

49 2010년 8월부터 세계자원연구소는 “Scope3 회계보고기준(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Scope3 회계보고기준이 완성되는 시점(2010년 말 예상)부터 기업은 Scope3가 선택사항인 경우,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을 선택하여 Scope3 배출량을 보고하거나 또는 Scope3 배출량 보고가 요구사항과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 하는 의무보고사항인 경우, “GHG Protocol Corporate Standard”과 “Scope3 회계보고기준”을 모두 채택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50 IAS 27, IAS 28 and IAS 31

4.24 CCRF에서는 GHG 배출량을 두 부분에 걸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음의 기관에 대한 것입니다.

Part 1 GHG 배출량 (영역 1 및 영역 2)

기관	GHG 배출량
구분 1	모회사, 그리고 재무회계를 위하여 그룹의 자산으로 간주되는 임대 자산 포함 재정통제 대상 자회사 ⁵¹
구분 2	합작투자
구분 3	지분할당
구분 4	part 1 총 GHG 배출량
	전체

4.25 위에 나와 있는 (“part 1 GHG 배출량”으로 이름 붙여진) 접근은, 교통비 및 에너지 사용 등의 간접적인 업스트림 영향과 판매 후 제품으로 인한 간접적인 다운스트림 영향에 관련된 GHG 배출량 정보가 연간 재무제표 내 다른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에 둔 것입니다.⁵² 하지만 CCRF는 재무보고에서 이용하고 있는 조직의 경계 내의 배출원과 배출 활동으로 인한 것에 GHG 배출량의 공개를 한정하는 것이 투자자가 흥미를 가질 GHG 배출량 정보를 누락시키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art 1 GHG 배출량에 더하여, 그러나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CCRF는 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이 “part 2 GHG 배출량”의 공개를 이용해 재무보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 경계 내에서의 배출원과 배출 활동으로 인한 GHG 배출량과 구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art 2 GHG 배출량 (scope 1 및 scope 2)

4.26 Part 2의 GHG 배출량은 다음으로 인한, 운영을 통하여 제어되는 것이나 기타 기관/ 활동/ 시설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a. Part 1에 통합되지 않는 것
- b. 규제 필수요구사항 아래 인가기업의 자격으로나 그 외 자격 (예를 들어, 임차인)으로 공개 조직이 보고해야 하는 것
- c. 기관/ 활동/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 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 i. 위험, 기회 및 재무적 영향에 보고 조직이 노출되는 것
 - ii. 보고 조직이 GHG가 배출되는 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타 간접적인 GHG 배출량 (Scope 3)

4.27 CCRF의 용도로써 기타 간접적인, 혹은 Scope 3의 배출량의 정의는 GHG 협약 이니셔티브의 초안 Scope 3 회계 및 보고 기준의 항목 4.1⁵³에 근거하며, CCRF의 이 부분은 해당 문서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로, CCRF는 간접적인 Scope 3 배출량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scope 3 배출량이 보고 조직을 위험, 기회 및 재무적 영향에 노출시킬 때, 위에 나와있는 전략 분석, 위험 및 지배구조의 내용 필수요구사항 아래 그 영향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⁵¹ Assets held under finance leases are treated as assets of the lessee under IAS 17 - Leases.

⁵² Turning questions into answers: Environmental issues and annual financial reporting - ICAEW and Environment Agency Report - September 2009: page 18.

⁵³ 4.1단락은 Scope3 배출량이 upstream배출, downstream배출, 기타Scope3배출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upstream배출은 구입 혹은 취득한 상품, 서비스, 원자재, 연료와 같은 투입물의 순환 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투입물 수령 이전을 의미합니다. downstream배출은 판매된 상품 혹은 서비스와 같은 생산물의 순환 중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기업의 판매 이후를 의미합니다. 기타Scope3배출은 통근과 같은 근로자의 활동이나 매매되지 않은 일련의 것들을 의미합니다.

GHG 배출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필수요구사항

4.28 이 부분은 GHG 배출 항목 4.19에서 요약된 GHG 배출 내용 필수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29 *Part 1 및 Part 2의 절대적인 총 GHG 배출량은 한 개 이상의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를 참고하여 산정하며, 이산화탄소에 상당한 미터·톤 개념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총 GHG 배출량”은 보고 기간 동안, 대기에 배출된 GHG를 줄이거나 보충하는 어떤 GHG 저감 활동, 상쇄 작용, 또는 활동에 대한 조정도 거치기 전에 대기에 실제 배출된 GHG의 배출량입니다. 여러 당국 아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의 경우 한 개 이상의 GHG 배출량 보고제도 아래 GHG 배출량 결과를 산정하도록 요구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CCRF에 따른 공개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4.30 표준화된 GHG 배출량은 조직을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GHG 배출량이 실제 GHG 산출량을 의미한다면 표준화된 GHG 배

출량 또는 “배출 강도”는 재정적 척도나 활동에 관한 척도에 대한 GHG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CCRF는 표준화된 GHG 배출량/배출 강도를 다음과 같이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수익을 참고하여 직접 (scope 1) GHG 강도 측정⁵⁴
- 비재무적 생산량을 참고하여 직접 (scope 1) GHG 강도 측정⁵⁵
- 회사의 수익을 참고하여 간접 (scope 2) GHG 강도 측정
- 비재무적 생산량을 참고하여 간접 (scope 2) GHG 강도 측정

4.31 *GHG 배출량 결과는 다음을 포함한 맥락 상 공개를 수록해야 합니다.*

- a. GHG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
- b. GHG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량적 방법론

예를 들어, 결과가

- i. 산정/추정에 근거한 것 (예를 들어, 활동 자료, 모델 혹은 물질/질량 균형에 적용된 배출요소)인지
- ii. 지속적인 직접 측정에 의한 것인지 간헐적인 직접 측정에 의한 것인지

iii. 측정 및 산정/추정의 조합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c. 공개 준비 시의 핵심적인 가정

d. 활동 자료에서 GHG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용한, 배출 요소 및 배출 요소의 출처

e. 이용한 지구온난화 잠재력 및 그 출처

f. SScope 2 (간접) GHG 배출량 결과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소비한 구매 전력의 세부사항 (KWh, MWh, 혹은 GWh)

g. GHG 배출량 산정 시 불확실성의 주요 효과에 대한 설명-예를 들어, 자료의 Gap, 가정, 외삽법, 계량/측정의 부정확

h. GHG 배출량 결과 입증 및 검증이 자체적으로 시행되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하여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의 언급

i. Scope 1 및 2 GHG 배출량 결과 항목 4.23-4.26에서 설명한 조직의 경계 내 활동 및 출처와 관련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

54 “수익(revenue)”은 현금, 수취계정, 기타 자산과 같은 경제적 이익의 총 유입량을 의미하며, 일반적 기업운영활동(상품 서비스의 판매, 이자, 저작권료, 배당금)을 통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국제회계기준(IAS)에 따른 것입니다. 수익은 특정국가에서는 “turnover, sales”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55 비재무적 산출은 생산의 단위(예를 들어, 반도체의 평방 센티미터당 GHG 배출량) 혹은 서비스 부문에서의 완료된 업무 수를 포함합니다.

$$\text{표준화된 GHG 배출량} = \frac{\text{절대적인 GHG 배출량(위의 4.29)}}{(\text{물리적 또는 경제적} \text{ 생산량})}$$

4.32 GHG 배출량의 결과는 상황에 적절하게 분류 및 분할해야 합니다.

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 GHG 배출량의 결과는 다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 a. GHG 분류-예를 들어, scope 1 및 scope 2
- b.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 주요 국가 혹은 지역
- c. 사업 단위 및 부서
- d. 배출원의 종류 (예를 들어, 고정식 내연, 과정 중 배출, 탈루성 배출)
- e. 배출 활동의 종류 (예를 들어, 전기 생산, 교통, 최종 이용자에게 전기 판매)
- f. 6가지 각각의 “교토” GHG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CCRF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회사의 총 재무적 입장에 집중하므로 시설 수준의 보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33 GHG 배출량의 결과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난 경우, 공개 및 설명해야 합니다.

보고 기간 사이에 GHG 배출량에서 변화가 일어난 이유로는 다음이 있지만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 유기적인 성장이나 쇠퇴
- 인수 및 투자 회수
- 주요 에너지 효율이나 공정의 개선
- 자료 수집 및 배출량 산정 과정의 변경

부록 1 - 결론을 위한 근거

1. CDSB의 보고양식은 공식 회의를 위해 2009년 5월 공개되었으며, 협의 단계는 2009년 10월 31일 완료되었습니다. CDSB는 기후변화보고양식(CCRF)을 다음에 기초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a. 공식회의 상 의견

b. 재정보고서의 원칙

c.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보고
이니셔티브들과 기준

d. 기후변화와 관련 공개에 대한 규제
전개

e. CDSB 및 기타 기관에 의한 조사

2. CCRF는 CDSB의 기술 실무그룹 (Technical Working Group, TWG)과 CDSB의 이사진 및 자문위원회의 협의로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을 위한 근거'는 CCRF를 만드는 CDSB의 기술실무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을 설명합니다.

CDSB 업무의 기원

3. 기후변화는 점차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재무적이고 전략적인 사업 위험으로서 그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DSB는 원래 주류 재무보고서 안에 사업전략을 체계화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해 CCRF의 개발을 맡았습니다.

4. CDSB의 CCRF 개발은 또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에의 표준화를 희망하는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시장에 지속적 불완전성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여기는 의견들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 국가, 지역 및 전 세계의 자발적 혹은 의무적인 시책들이 다양하게 고안되고 있습니다. CDSB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단일한 기준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 기후변화의 본질에 대한 일관적
의견의 부재

b. 공개할 정보의 질적, 양적, 적합성의
변화

c. 주주 및 시장에 의한 효과적 정보
이용 제한

d.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
로 인한 정보 제공자의 정보 공개 기피

5. 일부 관할구역에선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주류 재무보고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우선 제공될 정보가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CDSB의 연구와 분석은 현존하는 법에 합당한 많은 안건들을 제시했고, 이 안건들은 정보공개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책 제정자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CDSB가 제시하는 기준을 고려합니다.

정보의 중복 억제 및 조화

6. 정보의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들은 이미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규제당국, 탄소공개 프로젝트(CDP) 혹은 그들의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들은

현재 이미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에 대한 정량화와 보고를 위한 Greenhouse Gas Protocol과 ISO의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상이한 정책적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기준들이어서 실질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의무적·자발적인 계획 및 전 세계에 걸쳐 등장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공개 기준은 기본적 특징을 공유하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CDSB는 보고 프레임워크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관행을 따르기 보다는 이를 통합하고 보완하여 CCRF의 1.9단락에 명시된 바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09년 5월 회의에서 이러한 CDSB의 방향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공개의 단일화된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7.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한 자발적 이니셔티브 이외에도, CCRF의 4장에서 다뤄진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제적 요구는 이미 법 제정을 통해 현실화되었습니다. 보고의 부담과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CDSB는 이미 만 제정된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규제 요구사항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CCRF를 가능한 일관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CCRF와 규제적 요구사항간의 일부 충돌로 인하여, 방법론이나 보고 시기 혹은 경계가 CCRF의 요구사항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이러한 관행적·현실적 어려움과, 규제당국에 의해 설정된 조직의 경계와 보고 시기가 CCRF가 규정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예외의 적용은 시간을 두고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에 입각한 회계업무 vs. 요구사항

8. CDSB의 공식 회의에서 ‘규정된 원리에 입각한 회계보고’를 선호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기술실무그룹(TWG)은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에 입각하여 표준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용이성 또한 CDSB가 추구하는 업무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기술실무그룹(TWG)은 기존의 회계원리와 CCRF에 적합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간의 균형을 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필요조건, 기준, 설명을 위한 자료, 현존하는 규제적 요구사항 및 결정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은 경영진이 CCRF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경영진에게 실질적이고 유용적인 정보공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기타 비재무적 공개 업무와의 관계

9. 공식적인 자문회의의 응답자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혹은 비재무적 정보에 관한 작업을 이끄는 컨소시엄 단체와 같은 조직에 CDSB의 작업을 지속가능성의 다른 영역-예를 들어 물이나 폐기물 등-에 대한 기준 개발과 연계해 투자자 혹은 기타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0. 기술실무그룹(TWG)은 CDSB의 업무는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따라서 정보의 주된 사용자도 2009년 5월에 발간된 ‘결론을 위한 근거 문서’의 4장에 명시된 특정 투자자들로 제한해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11. CDSB는 주류 재무보고서 및 비재무적 자료보고서에 회사의 상태 및 업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적 정보들을 통합 게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국제기관과 밀접하게 작업합니다. The Prince Of Wal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 Project 및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와의 협력을 통해서 CDSB의 양식과 관련된 요소들이 채택되고, CDSB의 보고양식이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성 보고자료의 양식으로 오랫동안 사용될 것이 기대됩니다. CDSB는 IASB와 연계된 어떠한 공식적 업무도 수행한 적이 없지만 IIRC에의 참여 및 IASB와의 비공식적 사업보고서 프로젝트를 통하여 CDSB는 CCRF의 개발이 IASB의 작업과 유사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속적 개선

12. CCRF의 서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CCRF 1.0은 최종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발간하는 시기에 가능한 정보들로 구성된 최신 양식을 의미할 뿐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서 CDSB는 오랜 기간 CCRF 활용 경험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정보공개 관행의 변화에 대응하며, CCRF를 최신화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형식

13. 기술실무그룹(TWG)은 CCRF가 독립적인 문서로 발간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웹을 통해 게시하여, CCRF가 기후변화의 정의, 기준, 연구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4. 2009년 5월의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따라, 기술실무그룹(TWG)은 CCRF에 불필요한 상세항목이나 반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초안이 제시한 9개의 장에 나눠 제공된 정보들은 CCRF 1.0에 적절한 부분으로 통합 또는 재배치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4개의 장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1. 개요
2. 필수요구사항
3.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들
4. 공개내용요건

시행 안내서

15. 기업들이 CCRF의 요구사항에 의해 처리된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관련하여, 기술실무그룹(TWG)은 현존하는 정보공개에 다양한 사례에 기반을 둔 시행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시행 안내서는 CCRF 1.0이 발간된 이후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검토

16. 기술실무그룹(TWG)은 CCRF가 사후 확인과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도록, 기업들이 정보공개 기준에 입각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비록 현재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감사 및 확인 작업에 대한 CCRF 상의 요구사항이 없지만(예외적으로 국제감사기준(SA 720)은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하여 보고서와 제시된 정보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함), CDSB는 정보 공개자 및 사용자들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

개가 확인되지 않을 바라는 요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CDSB는 온실가스 문서 검증을 위한 기준인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IAASB)을 따르고 있으며, CCRF는 확인절차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CRF와 자발적 보고의 관계

17. CCRF는 주류 재무보고서를 통한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결정·준비·발표하도록 의도하고 있지만, 기술실무그룹(TWG)은 현재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안이 없으므로 CCRF에 의한 정보공개가 자발적으로 이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의 구성원들은 기업이 재정적 상태뿐만 아니라 자발적 혹은 규제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들을 공시한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순히 규제에 의한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함뿐 아니라, 기업의 총괄적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CCRF를 통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 보고서 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CCRF의 양식에 따르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 위의 결정에 따라서 기술실무그룹(TWG)은 CCRF의 적용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2009년 5월 공개된 초안을 따르면, 회계감사가 요구되는 모든 조직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보고자료에 CCRF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였습니다.

19. 기술실무그룹(TWG)은 사업보고서의 길이와 부피에 대해 염려하는 CCRF 하에서 주류보고서의 사업보고 부문이 가장 적합하다는 공식 자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의견에 대해 논의를 거쳤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주류 재무보고서와 자발적인 정보 사이의 항해를 위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페이지를 개발해오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a. 2.32 - 2.35를 통하여 정보가 게재될 위치를 주류 재무보고서 상에 명확히 하여, 내용이 중복 게재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길이를 적절하게 한정하고, 맥락적 정보를 제공하여 보고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b. 1.3을 통하여 CCRF의 정의를 내렸고, 이는 “주류 재무보고서에 담겨지고 관련된 정보공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하게 해줍니다.

c. 1.13을 통하여 주류 재무보고서 상의 정보공개를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였으며, 1.14를 통하여 주류 보고서와 연관된 자발적 보고서를 통한 정보공개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d.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정보공개 관행을 고려해서 CCRF는 정보가 수록될 위치에 대한 특정 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초기에, CDSB는 기후변화 관련 모든 정보들을 다루는 사업보고서 안에 기후변화 부분을 별도로 준비하기 위해 CCRF가 사용되기를 권고한다”는 언급을 이번 CCRF에서 삭제했습니다.

20. 기술실무그룹(TWG)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현재의 정보공개 관행 인정 및 반영
- b. 주류 재무보고서에 담긴 진실과 공개에 적절한 엄밀함과 경영책임을 지키는 주된 공개의 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위치와 관련해 유동성을 허용함.

온실가스 배출 보고

21. 온실가스배출 측정과 연계된 4장에서 필수요구사항과 관련해, CCRF는 4.20에서 명시된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에 의존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아래의 2가지 사유가 작용하였습니다.

a. CDSB는 현존하는 관행과 기준을 되풀이해 따르기 보다는 이를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CDSB는 세계적, 국내적, 산업적인 특정 시책, 규정, 방법론이 입법자에 의해 요구되거나 기업에 의해 널리 채택되고 있는 현 실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CCRF에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로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력의 중복과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CRF는 필수요구사항은 온실가스 배출 결과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인되고 온실가스협약(GHG Protocol)의 “Scope”에 따라 분류된 온실가스 배출 체계를 참조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b. CCRF의 필수요구사항은 정보공개가 재무보고 혹은 기후변화 관련 기업공개를 위한 규제적 필수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규제적 요구사항이 CCRF의 요구사항과 상호 충돌하는 경우, 규제적 요구사항을 우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규제적 시책을

포함하고 있는 “공인 GHG 배출량 보고제도”는 CCRF 필수요구사항과 양립합니다. CCRF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인된 GHG 배출 보고제도 아래에서 산정된 GHG 배출 결과가, 중복 노력과 보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CCRF와 일치되어 사용할 수 있음을 인증합니다.

22. CCRF는 1.3에서 정의된 “주식계좌가 필요한 자회사와 공동으로 통제되는 기관들을 포함해 통합된 재무제표가 필요한 그룹, 기업, 기업들과 기관들”로, “조직”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에 적용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결과는 기관 내에서의 자원 및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배출 결과는 “조직” 안에서의 활동과 원천과 관련하여 생깁니다. 하지만 기술실무그룹(TWG)은 회사와 기업의 소유 구조와 조직화된 구조 때문에 그룹 안에 있는 개별 회사들이 GHG 배출 보고를 위한 조직경계를 설정하는데 다른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기업은 그의 자회사나 다른 합병기업 또는 통제하에 있는 비합병 기관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는 합작회사나 제휴회사에도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RF는 벤치마킹을 지지하기 위해, 재무회계 관행과 맞추기 위해, 일관성을 장려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룹이 Scope 1과 2의 GHG 배출량을 고려하는 접근법을 제한하고자 하는 조직경계 설정을 권장합니다.

23. 기술실무그룹(TWG)은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정보공개를 “조직”에만 한정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을 만한 잠재적 온실가스 배출원 및 활동들을 생략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따

라서 CCRF는 통합된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기관들의 온실가스 배출원과 활동들인 Part 1에 더해 “PART 2 온실가스 배출”의 정보공개 권장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CDP 프레임워크 초안과 일치하는데, 표준화와 비교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조직의 경계 설정에 대한 접근법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술실무그룹(TWG)은 이러한 방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시험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4.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 보고에 관한 방식이 세계자원연구소(WRI) 및 CDSB의 회사 및 투자자 관련 프로그램들에 의해 고안되고 있는 중이므로, 기술실무그룹(TWG)은 CCRF 1.0에서는 Scope 3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4.27에 언급된 상황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적합한 서술

25. 2.22에 명시된 CCRF와의 일치된 서술을 위한 필수요구사항은 다양한 고려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회계기준 1(IAS 1)은 국제회계보고기준(IFRS)을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들에게 명백하고 솔직한 서술을 하길 요구합니다. 검증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회계보고의 원리 및 목적과 일치하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실무그룹(TWG)은 CCRF를 수용한 기관들에게 유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실무그룹(TWG)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공개가 비교적 새로운 규율이고 기관들의 보고능력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IFRS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하길 요구하는 IAS 1과는 달리,

CCRF의 요구사항이 기업의 상세계획과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CCRF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전체 혹은 부분에 한하여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6. 기술실무그룹(TWG)은 정확한 서술에 관한 요구사항과 정보의 결정 및 제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적용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유용한 정보들의 적용에 기반한 제한적 정보공개는 CCRF의 요구사항과 일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들의 특징을 CCRF의 요구사항이 제시하는 조건 안에서 적절하게 적용한 제한적 정보와, 자원 · 체계 · 정보에 대한 비가용성 혹은 비접근성에 의한 생략 혹은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보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들의 특징들

27.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나온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기술실무그룹(TWG)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들의 특징을 CCRF 상의 정보공개에 세밀하게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8. 비교용이성, 이해가능성, 검증가능성 그리고 적시성의 특징들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2장에서 서술하였으며, 이는 필수요구사항의 적절한 적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29. 공개 여론수렴을 통한 요청에 응답에서 “비용”의 제한적 원칙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에 대하여 비용의

제한적 원칙을 적용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부 기술실무그룹(TWG)의 구성원들은 CCRF를 선택하는 어떠한 기관들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려는 몇몇 연구들은 각각의 기관마다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결론을 내리는 건 무의미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의 구성원들은 현재의 정보공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용의 제한적 특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공개 비용의 추정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멤버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CCRF가 발행된 이후 공개된 공개이용지침서는 목적으로 하나인 조직이 CCRF에 따라 적응 비용을 줄이는 사례와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 내용

30. 2009년 5월에 제안된 초안에서의 보고 양식으로 알려진 것에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습니다. CCRF는 전문적인 판단을 적용하는 원리 및 전략을 제공하고 또한 경영진의 결정을 위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양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유용성, 판단, 해석의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으며, CCRF는 경영진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권장하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공개되는 콘텐츠 부분은 판단의 적용과 유용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개선될 것입니다.
31. 2009년 5월의 초안에 대한 의견들을 통하여 보고양식 1-3 사이에서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판별되었으며, 일부

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물리적·규제적인 위험들에 대한 정보가 전략적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술실무그룹(TWG)은 정보공개의 내용을 2개의 범주로 간소화하여 투자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32. 2009년 5월의 초안은 경영진이 좋은 사례로서 제공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내용에 대한 권고였습니다. 특히 초안이 제시한 공개해야 할 최소한의 모범적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태도에 대한 진술
-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
- 온실가스 원단위 측정

33. 기술실무그룹(TWG)은 최소한의 요구사항 및 모범적 권고사항의 수용에 대한 상대적 이익부여에 대하여 고려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는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잠재적으로 CCRF가 경영진에게 수행하길 장려하는 사항과 모순됩니다.
-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자발적, 의무적 보고를 통하여 발전되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입법자들과 SEC와 같은 담당기관들 및 CDP를 통한 투자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벤치마킹 등을 위해서도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은 점차 이러한 종류의 정보들에 친숙해지고 있으며 적절한 정보를 추가 보고서 없이 사업전략에 적용하

거나 주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3. 3장에 있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특징들은 어떤 정보가 가장 적절하고 유용하는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적용되어야 하는 방식에 대해 명백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PENDIX

- CDSB의 구성원은 CCRF의 서문에 개제되어 있습니다.
- CDSB의 주류재무보고서에 대한 주안점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cdsb.net를 통해 Copenhagen Update, page 4, December 2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uters Market Intelligence Series-Sustainable Banking: Risk, Reward and the Future of Finance.
- Smith, J.A., Morreale, M., & Mariani, M.E, Climate change disclosure: Moving towards a brave new world, Capital Markets Law Journal, August 2008, p. 2.
- Copenhagen Update, Appendix 2, December 2009.
- Copenhagen Update, Figure 3, page 5, December 2009.
- 2009년 CDP의 정보공개에 응답한 85%의 기업들은 기업연간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Copenhagen Update, page 3, December 2009.
- For example, CDSB's Copenhagen Update,
- IASB's Conceptual Framework project 참고 - IASB는 원칙에 기반하고,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지니며,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미래의 회계기준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http://www.ifrs.org/Current+Projects/IASB+Projects/Conceptual+Framework/Conceptual+Framework.htm>
-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mmittee, the OECD and UNCTAD's ISAR committee.
- <http://www.cdsb.net/news/news/cdsbcollaborates-with-the-princes-accounting-for-sustainability-project/>
- <http://www.ifac.org/Guidance/EXD-Details.php-EDID=0132>
- 투자자와 기업의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CDSB의 2010년 작업계획(Work Plan 2010)은 www.cdsb.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dsb.net

e mail : info@cdsb.net

CDSB Secretariat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40 Bowling Green Lane
London EC1R ONE
United Kingdom

CDP 한국위원회

135-863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번지 천마빌딩707
Tel 02-738-1142

korea@cdproject.net / www.kosif.org